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한기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 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기호의원)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하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안 제11조의2)

국가의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군인들의 중장기 복무를 독려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주체와 운영 주체 및 법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의 재판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재판매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판매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시행(안 제17조)

개정안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인 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매년 국군의 날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법안 심사시에는 ① 현행 ‘국군의 날’이 국군장병의 사기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사기 고취의 방안에는 군인가족 예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념일에 군인가족을 격려할 수도 있는 점,

② 군인 외에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의 경우 가족을 예우하는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된 선례가 없으며, 미국¹⁾ 외에는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현재 각종 기념일이 이미 190여개에 이르는 상황²⁾을 고려할때 기념일 추가 지정의 실질적 선양 효과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 시행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1)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1984년 이후 매년 5월 어머니의 날(둘째 주 일요일) 전 금요일을 ‘군인 배우자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의 공식 연설, 올해의 군인 배우자상 수여, 선물 제공 및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2) 현행 기념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기념일 현황】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 위원 한기호)

매년 9월 넷째주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